

濟州島의 離·再婚 研究

金 惠 淑*

目 次

- | | |
|----------------|---------|
| I. 序 論 | IV. 再 婚 |
| II. 初婚 解體者의 性格 | 1. 非再婚者 |
| III. 離 婚 | 2. 再婚者 |
| 1. 離婚過程 | V. 結 論 |
| 2. 離婚後의 生活 | |

I. 序 論

1. 研究의 意義

現代 家庭에서는 産業社會에 이르면서 分業化·産業化에 의해 그 機能中 많은 부분이 사회로 移轉되었다. 특히 생산기능의 변화는 家族員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社會的·經濟的 構造의 變化는 家族制度에도 영향을 끼쳐 大家族 制度가 붕괴되고 核家族化 현상이 보편화 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家族의 形態가 分化되고 소규모화 됨으로써 가족은 親族集團에서 고립된 단위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이 핵가족의 형태에서 家庭의 安定은 夫婦間의 정서관계에 기반하게 된다. 즉, 結婚生活의 中心이 夫婦에게로 移轉되었고, 家族의 영구성은 夫婦關係 여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이다.

濟州島는 과거부터 농경사회 大家族을 形成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理想的으로든 現實적으로든 韓國社會의 전통적인 直系家族(Stem family)을 택하지 않았다. 소인수의 夫婦家族(Conjugal family)의 형태를 취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강한 家父長權이 存在치 않았고, 父系의 혈연조직

* 師範大學 助教授

인 門中組織도 陸地에 비하면 비교적 발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핵가족에 가까울 정도의 夫婦家族制 이므로, 핵가족에서 볼 수 있는 제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夫婦間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육지 傳統的인 兩班社會에서와는 달리 친척들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미약하므로 結婚生活 자체의 安定性마저 흔들리게 되기도 한다. 家庭의 모든 決定權이 당사자들인 夫婦 두사람에게 있게 되므로, 갈등이 심각해 졌을때 친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압력을 가하거나, 규제를 가할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중재자가 없게 되어 家族의 인위적 解體 현상인 離婚까지도 일어나게 된다.

육지 傳統社會에서는 生活單位가 個人에게 있지 않고 모든면에서 「家」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夫婦間의 갈등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離婚이 당사자들인 夫婦가 決定할 수 있는 개인적 問題가 아니었다. 親族의 영향하에 놓이게 됨은 물론 개인의 입장보다는 家門의 체통이 더욱 重要하게 作用되었던 것이다. 朝鮮社會는 원칙적으로 離婚 制限主義¹⁾ 라는 사회규범으로 인해 內面的으로 는 問題가 심하더라도 노골화·표면화 되지않아 外면적으로는 家族의 안정이 유지되었다. 陸地의 경우는 이와같이 유교의 原理에 강하게 지배받은 전통사회의 영향으로 離婚非解消主義가 뿌리깊었으나, 現代에 이르면서 近代化가 價値觀의 變化를 초래하여 家單位에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離婚率이 상승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濟州島는 이와달리 地域的·社會文化的 제특성을 고려할 때 근대화 이전부터 이혼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離·再婚의 문제는 家族 및 親族組織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濟州島 家族研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社會構造 자체는 물론, “離婚은 社會變動의 指標(Index)로 삼을 수 있으므로”²⁾ 간접적으로나마 사회변동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濟州島 家族의 특징을 더욱 밝혀주며, 本島의 社會變化에 대한 理解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 傳統家族이나 他 島嶼地方과의 異質性 내지는 同質性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調查對象과 方法

調查對象 地域은 筆者가 一人家族에 대하여 調查 研究한 바 있는 북제주군의 H부락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소개는 생략코저 한다.³⁾ 계속 西部에 속하는 H부락을 택한 이유는 한 部落을 集中的으로 調查해 나감으로서 本島 家族의 特性을 綜合的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 및 既發表된 崔在錫의 조사지 東部 S부락⁴⁾과의 比較를 통해 도내에서의 地域間 差異點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 李兌榮, 「韓國離婚研究」, 女性問題研究院, 1957, p.16.

2) William J. Goode, "Divorce as an Escape Mechanism", *Marriage and Family in the Modern World*, 2nd. ed., Thomas Crowell Co., 1965, p.450.

3) 拙稿, "濟州島의 一人家族 研究", 「論文集」20輯 사회과학편, 제주대학교, 1985, 참조.

4)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本 研究을 위한 조사는 1985年 7月부터이나, 本格的인 것은 1986年 1月에 主로 行해졌다.

調查對象者는 '86年 1月 現在 居住하고 있는 既婚者 중에서 死別이든 離婚에 의하든 初婚이 解體된 者는 전부 대상이 되었다. 부부가 일시적인 別居로서 장차 再結合의 可能性이 다소나마 있어 現在 結婚의 解體가 확실치 않은 경우는 제외되었다. 既婚者 중에서 초혼이 해체되었던 자를 전부 대상으로 한것은 離婚과 再婚의 경향을 同時에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死別者나 離婚者는 再婚의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서 同一人이 離婚 및 再婚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分離하여 파악할 성질이 아니다. 또한, 이혼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했을때는 이혼자의 再婚如否는 살필 수 있으나, 배우자와 死別한 者의 再婚은 알 수 없게 된다.

調查方法은 미리 作成한 調查表에 의해 基礎的인 통계자료를 수집하면서 事例研究에 重點을 두어 分析하고 一般的인 現象 내지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면접은 본인을 직접만나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시행했다. 면접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수치로 여겨 드러내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參與관찰 및 주위 이웃들을 통해 파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本 部落에 居住하고 있는 보조자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II. 初婚 解體者의 性格

H부락의 총인구는 1986年 1月 1日 現在 555名으로서 男子가 249名이고, 女子는 306名이다. 女子 100에 대한 男子의 性比는 81.4로서 상당히 낮은 性比를 나타낸다. 이 부락에 居住하는 既婚者는 男子 105名, 女子 145名 總 250名으로서 역시 女子가 압도적으로 많다. 離·再婚의 대상자인 初婚 解體者들의 概括的 性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性別

既婚者 중에서 初婚 解體者는 남자 22名(기혼남의 21.0%), 여자 73名(기혼녀의 50.3%)로서 總 95名(전체 기혼자의 38.0%)이다.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6.8%나 되며, 기혼여자의 절반이 初婚 解體者이다.

2. 初婚 解體 事由

초혼이 해체되었던 사유는 配偶者의 사망에 의한 해체가 남자 12, 여자 47 總 59名으로서 초혼 해체자의 62.1%를 점유한다.

離婚으로 인한 경우는 男 10, 女 26 總 36名이며 전 초혼해체자의 37.9%를 나타내어 남·녀 모두 死別에 의한 해체가 많고, 여자는 더욱 심하다. 이는 東部의 S部落과는 아주 판이한 양상으로 보인다. <표1>에서 보면 兩部落 모두 既婚者나 初婚 解體에 있어서 女子가 단연 많은 점은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다르다. S부락은 초혼의 해체가 남·녀 모두 離婚의 경우가 우세하나, H부락은 死別이 훨씬 많다. 또한, S부락의 離婚率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다.

〈표1〉 초혼 해체 사유

내 용	지역별	S 부락 ⁵⁾		H 부락	
	성별	남	여	남	여
기 혼 자		147	191	105	145
초혼해체자		39 (26.5)	83 (43.5)	22 (21.0)	73 (50.3)
사 사별		13 (8.8)	35 (18.3)	12 (11.4)	47 (32.4)
유 이혼		26 (17.7)	46 (24.1)	10 (9.5)	26 (17.9)

* ()수치는 부락별 남:전체 기혼남자에 대한 비율, 여:전체 기혼여자에 대한 비율임.

3. 現在の 연령

초혼 해체자들의 현재의 연령을 보면 40대 이하는 극히 적다. 남자는 50·60代, 여자는 60代 이상에 치우쳐져 있어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표2〉 현재연령

연 령	성 별	남	여	계
	39세 이하		1	2
40대		2	4	6
50대		6	11	17
60대		6	16	22
70대		3	24	27
80대 이상		4	16	20

4. 初婚時 연령

초혼 당시의 연령은 남·녀 모두 16~20세가 지배적으로서 初婚의 경향을 나타낸다. 현재의 연령을 감안할 때 1920년경의 결혼연령은 현재보다 아주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표3〉 초혼연령

연 령	성 별	남	여	계
	15세 이하		2	1
16~20세		10	59	69
21~25세		6	12	18
26세 이상		4	1	5

5) 上掲書, pp.171~188.

5. 初婚 解體時의 연령

초혼이 해체 되었을 때의 연령은 남·녀 모두 20代 이하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代이다. 20·30代에서 많은 것은 대부분 離婚에 의한 者들이고, 60代 이상에서 다소 많은 것은 死別에 의한 경우이다.

〈표4〉 초혼해체 연령

연 령	성 별		계
	남	여	
20 대 이하	9	36	45
30 대	3	18	21
40 대	1	6	7
50 대	2	5	7
60 대 이상	7	8	15

6. 初婚의 同居期間

婚姻을 하고 그 初婚이 해체될 때까지의 同居期間은 5년 이하와 11년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5년 미만의 경우는 대부분 離婚에 의해, 11년 이상은 死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5〉 초혼 동거기간

기 간	성 별		계
	남	여	
1 년 미만	3	6	9
1~5년	6	23	29
6~10년	3	8	11
11년 이상	10	36	46

7. 教育程度

여자는 中卒 1, 國卒 3을 제외하면 모두 無學歷者이나 男子는 서당 1, 國卒 6, 中·高卒 各 2, 대학중퇴 1이고 無學歷者는 10名이다. 남자의 학력이 다소 높아 남녀간의 差異點이 드러난다.

8. 配偶者 有無 및 無配偶者의 生活

초혼 해체자 중에 現在 配偶者의 存在 有無를 보면 남녀간에 相反된 상태가 나타난다. 남자는 절반에 가깝게 배우자가 현재 존재하나, 여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여자와 달리 남자는 젊어서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후에도 아주 고령이 되기 전에는 가능만 하면 再婚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配偶者가 없는 자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살펴 보았다. 〈표6-2〉에 의하면 밖거리에서 칩

〈표6-1〉 배우자 유무(현재)

배우자	성 별	남	여	계
유		10	9	19
무		12	64	76

〈표6-2〉 무배우자의 생활

생활상태	성 별	남	여	계
혼자 독립		8	49	57
자식의 지		4	12	16
시모(친정모)		-	3	3

식을 분리하여 스스로 살아 나가는 경우 子家族이 한울타리내의 안거리에 居住하면서 다소 도움을 주는 사례가 男4, 女2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남자들도 자식들과 별도의 생활을 혼자서 꾸려간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본 部落의 一人家族 研究에서도 살핀 바 있거니와 여자의 강인함 뿐만 아니라 남자도 가능하면 子息에 依存치 않으려는 思考方式과 行動은 濟州島 家族의 特性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9. 婚姻式 및 婚姻申告

初婚의 婚姻式은 1事例를 제외하면 모두 정식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는 절반이상이나 된다. 申告를 필한 자도 結婚後 즉시 했던게 아니라 子女를 出生하고, 成長한 후에야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婚姻申告를 끝까지 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初婚이 離婚으로 해체되어 必要性이 없어진 상황이다.

〈표7〉 혼인신고 여부

신고여부	성 별	남	여	계
신고필		13	47	60
신고미필		9	26	35

10. 종교, 직업 및 初婚 結婚形態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불교가 14名이고 그 이외의 종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직업은 여자 1명이 중간상인, 1명이 무당이고 그 이외에는 고령이어서 勞動力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밭농사에 從事하고 있다.

結婚形態에 있어서는 연애결혼은 현재 28세의 男子 1명, 48세의 女子 1명 뿐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중매결혼을 하였다. 現在와는 달리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을 행한 1920年경에는 중매결혼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Ⅲ. 離 婚

本考에서 다루고자 하는 離婚의 범위는 法的 측면은 물론 事實的 關係의 破綻일지라도 夫婦關係가 명확하게 解體된 경우는 모두 포함하였다. 法律的인 觀點에서는 婚姻申告를 畢해야만 부부로서 인정을 받으며, 離婚에 대한 問題도 法的으로 처리되어야만 서로의 關係가 解消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結婚後 婚姻申告 없이 生活하다 헤어졌을 때 事實婚에 대한 事實離婚이지만 法律上으로는 夫婦였다는 근거가 없게 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本 研究의 다수 대상자들이 그러했 듯이 事實婚 關係의 夫婦가 헤어지는 현상도 적지 않다. 또한, 소수이긴 하나 本島의 경우 部落마다 있는 일로서, 과거 男便의 渡日로 인해 長期 別居끝에 男便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다른 女子와 再結合하였으나 호적에는 본처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離婚者로 처리했다. 法律的으로는 離婚이 아니나 서로간의 접촉이 일체없고 앞으로도 再結合의 가능성이 없어 事實上으로는 夫婦關係가 解體된 立場이기 때문이다.

離婚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코자 하여 初婚에서 뿐만 아니라 再婚의 경우라도 離婚經歷이 一回 이상 있는 자는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離婚 및 死別 → 再婚 → 離婚 등의 離婚者는 男12(초혼해체 남자의 54.5%, 전체 기혼 남자의 11.4%), 女 28(초혼해체 여자의 38.4%, 전체 기혼녀의 19.3%)로서 총 40名(전체 초혼해체자의 42.1%, 전체 기혼자의 16.0%)로 나타났다. 配偶者와의 死別을 제외하고 보면 離婚의 경험이 있는 남자는 既婚男의 12.8%(東部 S部落은 19.3%), 여자는 既婚女의 28.9%(S部落은 29.5%⁶⁾)로서 역시 初婚의 경우와 같이 S部落의 離婚率이 높게 나타났다.

陸地의 경우 어느 일정 지역에 대한 事實婚 破綻까지 포함하여 이혼율에 관한 集中的인 조사 보고가 없어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S부락 뿐만 아니라 H부락까지도 육지에 비하면 이혼율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⁷⁾

여기서 이혼 경력자들의 離婚年代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남자는 20年代~80年代에 걸쳐 골고루 分布되어 있으나, 여자의 경우 70年代 후반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40年

6) 上掲書, p.172.

7) 조사의 시각 차이로 본고와의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다음의 보고를 참고로 볼 때 제주도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① 地域別 婚姻에 比한 離婚率(1960~1966년 까지의 평균임)

서울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전국
4.8	3.4	3.4	3.2	2.7	5.3	2.9	2.9	7.7	3.8

徐永培·姜東湖, “離婚에 미치는 諸要因에 對한 考究”, 경남문화연구논문집 3, 1980, p.9.

代 후반·50年代 전반에 많다. 특히 여자의 경우 50年代 전반을 기점으로 現在로 올수록 다소 수그러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資料는 S부락의 이혼율이 더 높은 理由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해 볼 수 있게 한다. S부락의 離婚年代가 제시돼 있지 않아 정확치는 않으나 S부락의 調査時期는 本考와 10년 정도 앞서고 있음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H부락의 조사 과정에서 고령의 이혼 경력자들이 근래에 사망한 경우들이 나타났는데 本 調査는 生存者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제외되었던 것이다. 部落 村老들의 이야기를 根據로 해서 볼 때 H부락도 10년전에 조사를 했더라면 S부락과 동일 비율은 아니라 하더라도 現在 보다는 離婚率이 다소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 경력자들의 현재 연령을 보면 젊은층이 극히 적은데 이를 가지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혼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성급한 해석은 곤란하나 장래의 이혼율이 적어도 現在보다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本島 農村의 이런 점은 陸地農村과는 相異하지 않을까 한다.

〈표8〉 이혼년대

연 대 별	성 별		계
	남	여	
20년대 전반이전	-	4	4
후반	1	4	5
30년대 전반	1	2	3
후반	1	1	2
40년대 전반	-	3	3
후반	3	3	6
50년대 전반	1	5	6
후반	-	-	-
60년대 전반	1	2	3
후반	1	2	3
70년대 전반	1	2	3
후반	1	-	1
80년대 전반이후	1	-	1

② 총 인구수에 대한 이혼율

연 도 별	지 역 별		
	전 국	서 울	제 주
1970	0.66	0.90	1.97
1975	0.49	0.62	1.58
1980	0.48	0.61	1.14

혼인·총인구수에 비해 봤을때 1960~1980까지 어느 해건 전국·서울보다도 제주의 이혼율은 약 2배 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에서 「연령 및 혼인 상태별 인구」에 대한 통계자료임.

그러면 이들의 현재 配偶者 상태를 살펴보자. 남자 이혼 경력자중 현재 妻가 있는 경우는 9사례로서 모두 離婚→再婚(生存)者 들이다. 현재 妻가 없는 3사례는 結婚經歷이 매우 복잡하며 初婚이 離婚인 경우1, 死別인 경우 2로서 심지어 四婚마저 解體된 자도 있다. 現在 妻가 있는 없는 離婚한 男子는 전부 再婚의 經驗도 있음이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28名중 現在 男便이 있는 자는 7名이고, 없는 자는 21名으로서 男子와는 반대 현상이다. 現在 有配偶者를 보면 離婚→再婚 6명, 離婚→再婚→離婚→三婚 1名으로서 離婚을 2회나 감행한 경우까지 있다. 無配偶者는 離婚→再婚→死別 14名, 死別→再婚→離婚 2名, 離婚→再婚→死別→三婚→離婚 1名, 離婚→死別 2名, 離婚 2名이며 현재 男便이 없는 자도 거의 대부분 再婚經歷이 있다.

1. 離婚過程

離婚 經歷者들의 離婚에 이르기까지의 過程과 이에 관련된 當事者 및 家族의 態度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初婚時의 연령에 있어 남자는 20代 초반이 많으나, 여자는 10代 結婚이 지배적이다. 30세 이상에서 나타난 사례중 남자2, 여자2는 초혼은 死別이고 再婚이 離婚인 경우로서 再婚 연령을 의미한다.

〈표9〉 이혼자의 초혼연령

연령	성 별		계
	남	여	
19세 이하	2	20	22
20 - 24	5	6	11
25 - 29	2	-	2
30세 이상	3	2	5

〈표10〉 이혼연령

연령	성 별		계
	남	여	
19세 이하	1	7	8
20 - 24	5	13	18
25 - 29	1	5	6
30 - 34	3	1	4
35세 이상	2	2	4

이혼연령은 〈표10〉을 보면 남·녀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發見된다. 여자의 경우는 19세 이하와 20대 초반에 거의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30세 이상에서 나타난 3事例는 男便의 渡日 및 再婚에서의 離婚이다. 男子의 경우도 20代 초반이 많긴 하나 30代 초반에서도 초혼의 이혼이 나타나

여자보다 이혼연령이 다소 높다. 남자도 35세 이상은 再婚에서의 離婚이다. 그러나 서울은 여자의 경우 20대 후반에, 남자는 30대 초반에⁸⁾ 집중돼 있어 남·녀 모두 本島보다 높다.

離婚으로 해체될 때까지의 初婚 同居期間은 남자는 3년 이하, 여자는 4년 이하가 많다. 여자의 경우 同居 1년 미만과 1년에 43%의 높은 율을 나타내며, 6년 이상자중 3사례는 男便이 渡日한 특수사례이다. 서울의 경우는 5~10년이 가장 많고 20년 이상까지도 나타나⁹⁾ 本島의 이혼까지의 結婚 지속期間이 무척 짧음을 알 수 있다. Seglem과 Hayes의 研究¹⁰⁾에서도 初婚의 경우 3年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이에 대해 初婚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20세 전후의 早婚이었다는 점과 結婚이 임신의 압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관련지어 설명했다. 本島의 경우 婚前 '임신의 압박'이라는 측면은 해당되지 않으나 초혼의 해체를 정신적 미성숙으로 본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표11〉 이혼까지의 초혼 동거기간

기 간	성 별		계
	남	여	
1년 미만	2	5	7
1	3	7	10
2	2	3	5
3	4	2	6
4	-	5	5
5	-	2	2
6년 이상	1	4	5

초혼의 婚姻式은 1事例를 제외하고 모두 정식으로 올렸으나, 婚姻申告를 하지 않아 法律婚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婚姻申告를 했던 경우는 男3, 女6 뿐이다. “婚姻申告를 하지 않은 경우(事實婚)는 當事者 一方(혹은 雙方)의 行爲나 意思表示에 의해 언제나 자유롭게 離婚할 수 있으므로”¹¹⁾ 이혼율이 높아질 要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혼의 形態에 있어서도 法院이 개입되어 調停이나 재판에 의한 경우는 단 1사례도 없다. 어느 一方의 무조건 家出形式의 반강제적이거나 협의 또는 不知中에 이혼으로 이르고 있는 것 같다.

이혼할 때 자녀가 있었던 경우는 男5, 女4 뿐이다. 더우기 여자중 3사례는 남편의 渡日로, 그 당시부터 離婚이 의도됐던 것은 아니므로 子女가 있음에도 이혼을 단행한 5사례와는 구별된다. 특이한 점은 이들중 아들이 있었던 경우는 전혀없고 모두 딸만이 1~3명 있었다. 대부분의 이혼이 자녀없는 신혼초기에 일어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자 중에 子女 있

8) 崔在錫, 「現代家族 研究」, 一志社, 1982, p. 372.

9) 上揭書, p. 371.

10) Betty S. Seglem & Maggie P. Hays, “Reasons for Early Divorce”, 1975.

11) 金囁洙, 「혼인법 研究」, 法文社, 1969, p. 53.

는 경우가 적고, 아들이 있었던 경우는 전무하다는 것은 子女의 有無가 離婚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아들의 존재는 더욱 큰 요소로 作用하는게 아닌가 한다. 同居期間이 길어지고, 子女의 出生이 따르게 되며, 아들이 있는 경우 이혼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는 이혼당시 자녀 있었던 입장이 2/3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¹²⁾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傳統的 思考方式으로 離婚에 대해서 結婚非解消主義가 강하기 때문에 社會的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마저도 용납치 않게 된다. 夫婦間의 갈등이 심화될대로 심화되어 도저히 結婚生活 지속이 불가능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이혼이 成立되므로 子女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그러나 本島의 경우는 그런 意識이 강하지 않으므로 일찍 청산하여 자녀문제의 심각성이 덜 한 것 같다.

離婚을 먼저 제기한 쪽을 보면 本人들 이외의 다른 사람이 간여된 경우는 男子의 父母 1事例 뿐으로서 전적으로 當事者들의 意思에 좌우되고 있다. 夫婦가 거의 同時 3事例, 男便의 제기 11事例이고 25事例는 婦人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거나 家出하여 行動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동부 S부락 및 서울¹³⁾에서도 婦人쪽에서 이혼을 먼저 제기한 비율이 높아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Gunter가 “結婚生活의 충돌에서 이혼을 먼저 언급하는 쪽은 女性”¹⁴⁾이라는 研究와도 一致되고 있다.

그러면 이혼 경력자들이 이혼에 대한 法的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자. 婚姻申告를 미처 못한 상태에서 헤어져 法的으로 離婚을 처리할 것이 없었던 경우가 31事例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法律上으로 離婚에 대한 申告를 한 경우는 7事例 뿐이다. 나머지 2事例는 事實婚은 파괴됐으나, 法律婚은 有效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男便의 渡日로 헤어지긴 했으나 改嫁하지 않고 子息을 키우는 本妻를 法的 처리까지 할 수 없어서 그냥 있는 경우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재판에 의한 이혼은 전혀없고 離婚過程에 있어 一方의 家出에 의한 사례가 많다. 男子의 경우 의도적은 아니었으나 渡日로 인해서, 또는 婦人이 마음에 없어 그런 意思表示를 婦人에게 한 후 집을 나와 오래 객지로 돌아다니다 보니 婦人도 포기하고 改嫁해 버린 사례도 있다. 女子의 경우는 과거 제주도의 경우 보편적으로 그러했듯이 新婚초에 親庭에 왔다 갔다 하며 이중적 生活을 하다 結婚生活의 유지가 싫어져 친정에 長期的으로 머물러 있다보면 자연스럽게 離婚으로 進行된다. 이때 男便이 妻家로 婦人을 데리러 가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거의는 내버려 두는데 그런 상태에서 왕래없이 지내다가 세월이 흐르면 서로가 이혼으로 받아들 이게 된다. 따라서 이혼을 學論하고 時間을 끌면서 협의에 이르는 形態가 드물다. 보통 婦人이 말없이 親庭으로 가서 長期 居住하다 보면 그 結婚은 완전히 파기되는 예가 보편적일 정도이다.

離婚하게 되는 事由에 있어서도 男便의 經濟的 무능, 구타, 불치의 질병, 不貞行爲 및 婦人과 시집식구와의 不和, 無子女가 各各 1事例씩 그리고 男便 渡日이 3事例 뿐이다. 그 이외의 21事

12) 崔在錫(1982), 前掲書, p. 389.

朴商玉, “離婚의 社會學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68, p. 103.

13) 崔在錫(1982), 前掲書, p. 373.

14) B. G. Gunter, “Notes on Divorce Family as role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7, pp. 95~98.

예는 상대방에게 뚜렷한 단점이나 또는 結婚生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정이 가지 않아서 헤어졌다는 경우로써 結婚生活에서 夫婦間의 心理的 安全性이 강조되는 것 같다. 이와같은 현상은 현재의 연령을 참고로 할 때 陸地 傳統家族에 比하면 놀라울 정도의 비율인 것 같다. 東部 S부락의 경우 “離婚忌避意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離婚의 과정도 간단하고 때로는 아주 우발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¹⁵⁾는 보고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서울의 경우는 이혼 사유에 있어 ‘異性關係’가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¹⁶⁾ 男子의 不貞으로서 女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本島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여자가 결혼할 때 준비한 세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핀 결과 남편간의 반응에 약간의 差異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 전부 다시 가져왔다 3, 이불등 일부만 가져왔다 6, 모두 그냥 두고 왔다 19이다. 남자의 경우는 절반은 전부 돌려 보냈다고 하고, 절반은 별 세간이랄 게 없었다는 응답이었다. 남자가 전부 돌려 보냈다는 것은 일부만 가져간 경우에도 그렇게 답하고, 별 세간이 없었다는 경우는 여자가 도로 세간을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답하는 것 같다. 보편적으로 이혼을 제기하든 아니하든 간에 여자가 집을 나가버린 경우 세간을 그대로 두고 오고, 男便쪽에서 먼저 이혼제기가 됐을 때는 가져오는 것 같다. S부락에서는 “男子가 제기하면 보통 女子가 세간 전부를 가져가고, 서로 싫어서 離婚하면 그 반만 女子가 가져가고, 女子가 離婚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간을 놔두고 가는 것이 慣例”¹⁷⁾라 했으나 H부락의 경우에는 이런 공식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가 집을 나와 버렸을 때 그 남편이 데리러 온다거나 협의를 거치는 중간과정이 거의 없으므로 집을 나온 후 세월이 흐른 뒤 어느 一方이 再婚이 되거나 한다. 그러면 세간을 가지러 간다거나 월가월부 하기에 이미 서로가 생소해져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離婚이 成立됐을 때 男便 渡日의 경우 고향에 있는 財産을 婦人이 관리하며 生活도록한 1事例 이외에는 재산을 婦人에게 나누어 주거나 위자료를 주고 받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 婦人이 子女를 양육할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경우 朴商玉¹⁸⁾의 研究에서는 “이혼녀 68명중 3명만이 위자료를 받았고 生活費 지급은 4명(장기別居의 경우에 한함)뿐이며, 어린애 양육비도 어린애를 어머니가 맡고 있는 경우가 35명임에도 불구하고 3명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43.5%가 위자료를 주고 받은”¹⁹⁾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이후의 거처 장소를 살펴보면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 本島의 경우도 陸地와 같이 結婚하면 女子는 남자쪽으로 婚入하기 때문이다. 男便의 渡日로 婦人이 本婚家에 머물러 산 경우 1, 객지에서 방직생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지낸 경우 8, 그외 19事例는 親庭에서 빠르면 1年, 늦게는 10년 정도 머물다가 再婚하는 경향이다. 이혼 이후의 경제 해결에 있어서도 남자는 本人의 財産이나 職業 및 勞動에 의해 生活한다. 그러나 女子의 경우는 渡日 男便의 財

15) 崔在錫(1979), 前掲書, p. 178.

16) 崔在錫(1982), 前掲書, p. 377.

朴商玉, 前掲書, p. 51.

17) 崔在錫(1979), 前掲書, p. 178.,

18) 朴商玉, 前掲書, p. 127.

19) 崔在錫(1982), 前掲書, p. 404.

産을 물려받은 1事例 외에는 전혀 재산이 따로 없었다. 親庭에 의지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직업이나 勞動으로 해결하나 대부분은 친정에서 지내다가 再婚하는 것이다. 물론 親庭에 있을지라도 本島 女性은 勞動力이 강하기 때문에 親庭에는 정신적 의지일 뿐이지 經濟的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만약에 經濟問題에 있어서까지 의지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리라 본다. 과거의 生活程度로 보아 출가한 딸이 친정에 勞動力 제공 등 도움이 되면 몰라도 經濟的으로 부담을 줄 경우 여자의 친정출입 및 의지는 그렇게 자유스럽지만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하게 됐을 때 당사자들이 父母나 친척과 상담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 상담했던 경우는 단지 3사례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신의 父母 2, 配偶者 父母 1로서, 대개 이런 상황은 S부락과 비슷하나 서울과는 전혀 다르다. 서울의 경우 누구에게든지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담자는 자신의 부모인 사례가 많다.²⁰⁾

最終 決定權도 父母나 他人의 개입이 거의 없다. 夫婦 共同決定 5, 男便決定 6, 婦人決定 28, 男子의 父母決定 1로서 婦人의 決定權이 상당히 강하다. 이는 이혼의 계기자에 있어서 婦人이 압도적이었던 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혼당시 父母나 친척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남자의 경우는 전부가 방관적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시부모 권고 2, 친정부모 권고 1, 친정부모 반대 1, 친정부모는 방관적이었으나 시부모 강력반대가 1事例 뿐이다.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반대표시를 한 경우가 각각 1사례 뿐이라는 사실도 陸地 傳統家族과는 거리가 멀다.

2. 離婚後의 生活

夫婦中心의 家族에서는 離婚이 한 家族을 붕괴시키므로 當事者 및 家族關係 전반에 걸쳐 變化를 초래하게 된다.

먼저 本人들의 離婚 직후와 現在의 심정을 살펴 보았다. 이혼직후의 심정에 있어 남녀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여자의 경우 담담했다는게 절대적이다시피 했으며, 억울하다와 죄책감을 느

〈표12〉 이혼직후의 심정

내 용	성 별		남	여	계
	성	별			
담	담		5	22	27
후	련		4	3	7
비	통		1	-	1
미	련		2	-	2
억	울		-	2	2
죄	책	감	-	1	1

20) 崔在錫, 上揭書, p. 380.

朴商玉, 前揭書, p. 98.

졌다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남자는 담담하다와 후련하다가 거의 비슷하며, 비통·미련이 있었다는 경우도 있으나 억울하다거나 죄책감을 느낀 사례는 없다. 세월이 흐른 현재에 와서의 심정은 남녀 모두 거의 대부분이 담담하다고 답하고 있다. 약간 후회된다는 경우도 1사례 있으나 이는 離婚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再婚生活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지 않았는가 하는 意味에서의 후회이다.

離婚의 영향중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게 子女問題인데, 이혼할 당시 子女가 있었던 경우가 8事例 뿐이어서 一般의인 傾向 파악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態度에 있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父母가 헤어졌기 때문에 철이 없어 굳이 알리거나 議論하거나 할 立場이 아니었다. 子女 養育者는 3事例가 男便, 5事例가 婦人이었다. 대체적으로 子女의 養育은, 擔當한 쪽에서 책임을 지며 헤어진 후 보조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子女들과 헤어진 生父·生母간의 關係에 있어서도 접촉·왕래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아들이 있는 사례가 전혀 없는 데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들의 경우라면 家系繼承 意識이 傳統家族에 비해 약하다 할지라도 生父를 찾는 일이 없을 수 없으며, 生父쪽에서도 접촉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 夫婦家族을 取하는 本島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根本的인 것은 韓國家族의 테두리내에 있기 때문이다.

양육과정에서도 굳이 生父·生母에 대해 숨기거나 하는 경우 없이 노출시킨다. 子女關係뿐만 아니라 離婚한 當事者間에도 서로 왕래가 있거나 經濟的 도움을 주고 받는다가, 子女養育을 상의하는 등의 일체의 접촉이 없어 보인다. 또한 친척관계 즉 여자의 경우 본시댁이나 친척, 남자의 경우 本妻家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한다.

보통 이혼의 양상이 자녀없는, 동거기간이 짧은, 젊은 시절에 이루어지며 여성이 원한 경우가 많아 이혼에 따르는 心理的인 문제가 심각치 않으며, 이혼 경력자로서의 사회적 차별의식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더불어 이러한 점은 離婚이나 再婚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도덕 관념이 존재치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풍조가 조성돼 있는데서도 기인하는 듯하다.

IV. 再 婚

初婚의 解體者 95名 중에서 再婚經歷이 있는 男子는 13名(59.1%)이고, 女子는 32名(43.8%)로서 총 45名(47.4%)에 달하여 여자보다 남자의 재혼율이 훨씬 높다. 이 중에는 三婚 이상자가 남자 1, 여자 3이며 최고 四婚 經驗者도 1名 포함해 있다. 또한 女子가 妾이 된 경우도 再婚으로 간주했는데 이는 “濟州島의 妾制度의 성격은 妻妾間의 身分의 差異가 심했던 陸地의 傳統的 妾制度의 성격과는 매우 相違”²¹⁾하여 妾이 되는것을 일종의 再婚으로 意識하는 面도 있기 때문이다. 分析過程에서 三婚 이상의 經驗者는 첫재혼을 대상으로 하였다.

再婚者中 초혼이 이혼으로 해체되어 재혼한 경우는 남자 10명(이혼남의 100%), 여자 22명(이혼

21) 崔在錫(1979), 前掲書, p.216.

녀의 84.6%)로서 총 32명이다. 서울²²⁾과 比較해 보면 상당히 높은 再婚率을 나타내고 있다.

死別로 인한 재혼은 남자 3명(死別男의 30%), 여자 10명(死別女의 21.3%) 총 13명이다. 남녀 모두 配偶者와의 死別보다 離婚에 의한 再婚이 지배적이며, 離婚男子는 모두 再婚했음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혼자는 초혼의 해체시기가 보다 젊었으므로 일찍 再婚한 결과로 보인다. 死別의 경우는 초혼의 해체시기에 이미 연령이 많이 들었거나 또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再婚을 앞거나 한 때문이다.

재혼 경력자중에 현재 配偶者 有無를 살펴보면 男子의 경우 離婚→再婚 10名, 死別→再婚 1名으로서 모두 10名이다. 여자의 경우는 離婚→再婚 6名, 死別→再婚 2名, 死別→妾 1名, 離婚→再婚→離婚→三婚 1名으로서 역시 10名이다. 男女 모두 死別 보다는 離婚에 의한 再婚者가 많다.

現在 配偶者가 없는 자들은 男子의 경우 3名 뿐인데 2事例는 死別에 의해, 1事例는 離婚에 의해서이다. 여자는 21名이나 되는데, 離婚→再婚→死別 11名, 死別→再婚→死別 6名, 死別→再婚→離婚 1名, 死別→再婚→死別→三婚→死別 1名, 離婚→再婚→死別→三婚→死別 1名, 死別→妾→死別 1名으로서 離婚→再婚→死別의 경우가 가장 많다. 남녀 모두 死別에 의한 再婚보다 離婚에 의한 再婚者들에게 配偶者가 더 많이 生存해 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남녀 모두 死別 이후 獨身으로 지내는 자들이 많은데, 여자는 젊은 시기에 死別로 초혼이 해체 됐다더라도 子息이 있을 때 再婚을 기피한 것이고 남자는 老年期에 喪妻한 者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 非再婚者

初婚이 解體된 95名 중 再婚하지 않은 경우는 男子 9, 女子 41, 총 50名으로서, 구체적인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再婚하지 않은 理由는 여자의 경우 자녀들을 위해 도덕적 책임감 때문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은 子女도 있었고 연로하여서 생각치 않았다고 하나 여자가 생각하는 고령과 남자의 생각에는 差異가 큰 것 같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結婚 解體 時期가 너무나 고령이 되어

22) 이혼자의 再婚與否

再婚與否	女(N=282)	男(N=95)	計(N=377)
再婚안함	51.78	23.16	44.56
再婚	25.89	60.00	34.48
再婚豫定	6.38	9.47	7.16
再婚希望	15.60	7.37	13.53
其他	0.35	-	0.27

崔在錫(1982), 前揭書, p.409.

〈표13〉 非再婚 理由

이 유	성 별		계
	남	여	
자녀들을 위해	2	27	29
상대자가 없어서	2	2	4
본인의 뜻이 없어	1	1	2
고령이어서	4	11	15

〈표14〉 비재혼자의 초혼해체 연령

연 령	성 별		계
	남	여	
20대 이하	-	5	5
30대	-	16	16
40대	1	6	7
50대	1	5	6
60대	4	4	8
70대 이상	3	4	7

서 再婚을 못하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이는 非再婚者들의 初婚 解體時 연령 및 子女有無 관계가 뒷받침해 준다. 〈표14〉에서 보듯이 재혼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50代 이하는 남자의 경우 2事例 뿐이나, 여자는 60代 이상이 오히려 적은 편이며 30代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非再婚者 중 여자의 경우 딸만 1~3名 있는 6事例가 있긴하나 子女가 전혀 없는 경우는 단 1사례도 없다. S部落의 경우 再婚의 理由로서 “가정이 어려운 者 즉, 經濟解決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²³⁾ H부락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다른 것 같다. 濟州島의 女性은 周知하다시피 財產이 없어도 勞動力이 강하므로 離婚 자체가 經濟的으로 生計의 유지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즉 육체 자체가 財產인 것이므로 건강한 생활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는 연령(고령)이, 여자는 子女有無가 再婚의 決定的 要因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자는 자녀가 없으면 재혼하나 자녀가 있으면 젊더라도 재혼의 길을 택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재혼희망 여부에 있어서, 희망한 경우는 남녀 모두 각 1사례 뿐이고 그외는 모두 희망치 않고 있다. 젊었을 때 재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자 2사례만이 후회했는데, 자녀들이 성장한 후 老母의 고초를 잘 몰라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非再婚者들은 농사를 짓거나 밭살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연로하여 노동력이 없거나 아주 고령의 남자들은 자식들에게 의지하여 생활하기도 한다.

23) 崔在錫(1979), 前掲書, p.183.

2. 再婚者

初婚에 실패하고 再婚한 사람은 남자 13名, 여자 32名 총 45명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再婚事由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젊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여자는 젊기도 했었지만 믿고 의지할 또는 부양 책임을 저야할 자녀가 없었다는 점이 重要하게 作用되고 있다. 經濟的인 理由로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암시하는 자가 없었다. 사실상 再婚女 32명중에 재혼 당시 자녀 있었던 경우는 3사례로서 모두 딸이었다. 면담결과 만일 아들이 있었다면 아무리고 생되더라도 재혼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재혼생활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고 초혼에서 아들이 있고 자신이 키울 수 있었다면 굳이 재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재혼남자 13名 중에 재혼당시 자녀 있었던 경우가 5사례인데 이중 4사례는 딸이었다. 1사례에서만 男妹가 있었는데 三婚 經歷者로서 초혼 배우자와의 소생이 아니고 再婚者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표15〉 자녀양육자

양 육 자	성 별		남	여	계
	남	여			
남	편		3	3	6
부	인		2	-	2

再婚後 초혼의 자녀 양육담당자를 보면 〈표15〉에서 보듯이 남편인 경우가 많다. 남자의 경우 남편이 양육하는 3事例를 보면 재혼부인이 자신이 낳은 자식과 구별없이 키운 것으로 보이며, 부인이 양육하는 2사례는 生父와 전혀 왕래가 없고 소식조차 없어 조사가 불가능 했다. 따라서 그 本妻의 再婚여부나 자녀양육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여자의 경우는 재혼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사례는 전혀 없고 3사례 모두 남편 또는 시댁에서 담당했다. 그중 1사례는 生母에게 가끔 찾아오는데 再婚男便이 이해해주고 잘 협조해 준다. 이 사례는 본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再婚男便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혼연령은 남녀 모두 20, 30대가 주를 이루며 남자의 경우는 60代도 1사례 있다. 여자는 20

〈표16〉 재혼시 부인의 위치

위 치	사 례
본처와 이혼후여서 정식부인	14
본처와 사별후여서 정식부인	7
총각이어서 정식부인	2
본처 있었으나 둘째 부인으로	7
첩	2

대의 再婚이 많아 초혼해체 연령은 그보다 더욱 낮을 것이고 초혼 同居期間도 짧을 뿐만 아니라 子女도 出產치 않았을 것이므로 再婚으로의 進行이 쉽고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재혼 당시의 위치에 있어서 남녀의 입장이 다를 것이므로 여자의 경우만을 보면, 재혼의 남편이 本妻와 이혼후였으므로 정식부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다. 여자는 재혼임에도 남편은 총각이었던 경우도 있다. 남자에게 本妻가 있는데 서로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린 예도 있으며, 본처는 즉시 집을 나가 버리거나 다소 기다려 보다가 포기하고 改嫁하기도 한다. 本婦人을 밀쳐내고 살림을 차려서 生活하다 본부인과의 사이가 해결되면 호적에 올리고 떳떳이 살아가기 때문에 妾의 경우와는 結果的으로 다르다. 妾은 2사례 있는데 남자가 본처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잠시 들리는 형태이다.

이혼 경력자가 再婚했을 때 여자의 경우에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점 없이 再婚 媳宅과의 친척 관계나 부락에서의 위치 등에 별 문제없이 원만하다. 본인은 再婚이나 男便은 총각이었던 경우, 본부인 있음에도 둘째부인이 된 경우, 심지어 妾의 경우마저도 그 당시의 주위의 시선을 받게 되나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사회에서의 차별의식은 느끼지 않게 되는 것 같다.

再婚에서의 結婚式은 男子 3事例, 女子 2事例만이 정식으로 올렸고 그외는 모두 아무런 절차 없이 두사람이 生活을 시작했다. 결혼식을 거행한 경우는 配偶者의 立場은 初婚이었기 때문이다. 상대방도 再婚의 경우는 격식이 없으나, 총각 또는 처녀이면 결혼식도 올리고 제주도의 풍습대로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 再婚의 婚姻申告는 양상을 달리하여 남자 1事例, 여자 4事例를 제외하면 모두가 申告를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재혼의 配偶者와 오래 同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해 버리거나 離婚 또는 本人이 妾이었던 입장이다.

再婚者 중에 現在 配偶者가 生存하여 同居하는 경우는 男子 10名, 女子 9名 뿐이다. 여자의 경우 再婚 配偶者마저 死別한 者가 19名, 離婚이 2名이다. 남자의 경우 再婚婦人이 사망한 자는 없으나 離婚은 3사례 있다.

한편 再婚者 중에 포함되어 分析되긴 했으나 三婚 이상인 자를 보면 남자 2, 여자 3사례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 本人이나 配偶者 중 구속을 싫어하여 한곳에 오래 정착치 못하는 성격 때문에 잦은 婚姻과 離婚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운 結婚에 대해 깊은 思考끝에 행한다기 보다 즉흥적으로 살림을 차리는 성향마저 엿보인다. 妾의 경우 1사례는 아들없는 집에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1사례는 여성 本人이 아들을 원해 의도적으로 첩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낳음으로써 사회적으로 妾의 위치를 다소 정당화 시키는 것 같다.

V. 結 論

서부지역의 H부락을 대상으로 初婚 解體者를 分析한 結果 離·再婚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初婚解體 事由는 離婚 보다는 死別이 많고, 女子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그러나 東部 S부

락은 離婚에 의한 解體가 많다. 現在 配偶者 없는 자들은 子息과 함께 살기도 하나 대부분은 혼자 生活한다. 男子들도 配偶者 死別後 年老함에도 독립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한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2. 離婚經歷者는 초혼해체 남자의 54.5%, 초혼해체 여성의 38.4%로서(전체 기혼남자의 11.4%, 기혼여자의 19.3%) S부락 보다는 낮으나 육지 보다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낸다. 이혼율이 195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수그러드는 듯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3. 이혼의 형태는 事實婚의 解消가 지배적이며 婦人이 離婚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婦人이 親庭으로 가서 長期的으로 居住하면 男便도 離婚으로 받아들이는게 보편적으로 그 과정이 간단하다. 상대방에게 애정이 생기지 않아 離婚한 사례가 많아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價値觀이 많이 作用한다.

4. 離婚後 女자가 結婚時 준비했던 혼수 즉 세간의 처리는 여자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대로 두고, 男便이 離婚을 제기했을 때는 여자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離婚時 재산분배·위자료·生活費 등을 주고 받는 경우도 없으며, 이혼후 女子는 직업을 갖기도 하나 보통 친정에 머물다가 再婚한다. 제주도 女性은 勞動力이 강하므로 離婚後 財産이 없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혼시 주위에서도 방관적이며 當事者들의 決定에 의한다.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문제 발생이 미약하여 이혼후 담담하다.

5. 이혼당시 자녀있던 경우는 8사례에 불과하며 모두 딸이다. 부인이 자녀양육을 해도 生父의 보조가 없고, 헤어진 부모 자녀간은 물론 부부간 접촉이 거의 없다.

6. 초혼해체자 중에서 男子는 59.1%, 女子는 43.8%가 再婚했다. 初婚當時 事由別로는 離婚男의 100% 離婚女의 84.6%, 死別男의 30%, 死別女의 21.3%가 再婚했다. 男子의 再婚率이 단연 우세하며 남녀 모두 死別 보다는 離婚의 경우가 再婚率이 높다. 男子의 경우는 연령이, 女子의 경우는 子女有無가 再婚 여부에 決定的 要因으로 作用하는 것 같다.

7. 再婚時 女子의 位置는 보통은 정식부인이 되나, 둘째부인이 되거나 쫓이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부인은 본부인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정식부인이 됨으로써, 첩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정당화 시키며 사회적으로도 용인받게 된다.

8. 再婚의 成立過程도 간단하며, 상대방이 初婚이면 격식을 갖추나, 양쪽 모두 再婚이면 아무 절차없이 살림을 차린다.

9. 再婚時 자녀있던 사례가 적으며 대부분 男便側에서 養育을 담당한다. 再婚婦人은 자신의 소생과 별 구별없이 기르며, 婦人이 子女를 데리고 再婦한 事例는 全無하였다.

以上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重要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離婚 연령이 상당히 낮고, 同居期間도 짧으며 婚姻申告도 하기전에 離婚하는 傾向으로서 過程, 形態, 事由 등이 간단하다. 따라서 本人이 받는 心理的 고통이나 社會的 差別意識이 傳統家族에 比하면 미약하다. 離婚者는 거의 再婚하게 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死別者는 經濟的 側面보다는 女子의 경우 子女의 有無라는 立場에서 理解되어져야 하리라 본다. 특히 아들이라는 요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유교의 原理에 입각해서라기 보다는 정

신적으로 믿고 의지할 아들이 있을 때 굳이 再婚으로 구속받기 싫어하는 本島 女性의 강한 自意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再婚을 하는 것도, 再婚을 않는 것도 모두 自意識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本島 女性은 離婚을 당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결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서울을 포함한 陸地보다는 離婚率이 높을 것으로 보이니 H부락이 S부락보다는 낮다. 이는 조사시기의 차이도 있거니와 서부에 비해 동부의 여성이 보다 적극적이며 또한 서부보다 동부쪽이 유교의 원리를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점은 추후 多角度에서 검토 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陸地 傳統的 家族뿐만 아니라 核家族을 다수 取하는 근래의 서울과도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本島의 경우도 젊은, 교육받은 世代의 離婚 및 再婚의 형태나 과정은 本島 나름의 特性을 지니면서 앞으로 상당히 변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Summary

A Study on Divorce and Remarriage of Chejudoians

Kim Hye-sook

In this paper, the writer attempts to analyze the tendencies of the first divorced persons by death or by divorce in Chejudo; especially divorce procedure, divorce suits, remarriage and living conditions after divorce.

The tendencies of divorce and remarriage required are as follows:

1) The numbers of divorced women are far more than those of divorced men and first divorcees outnumber the marriage-keeping women. Today their average ages are more than sixties, and they got married at the age of sixteen to eighteen. In 1910s to 1950s, they were married earlier than these days. When they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or wives, they were below twenties. The first divorcees have lived with their husbands for about five years, on the other hand the divorcees by their husbands' death have lived with their husbands for more than ten years. They hold formal wedding but many of them do not register their marriage.

2) The divorces by death are far more than the other divorces. In the case of divorced men, 54.5% of the divorced men are the first divorced (This is 11.4% of the total married men), while 38.4% of the divorced women are the first divorced women (This is 19.3% of the total married women). In the middle of 1950s, the divorce rate were high, but it is likely to be decreased recently.

3) Regardless of divorce or divorce by death, most younger men remarry, but women do not. If a woman has sons or daughters, she will not remarry at all. If not, she usually gets remarried. Especially children have much to do with their remarriage.

4) The process of divorce is comparatively simple. If there is no conjugal affection between a husband and his wife, the wife is more often than not parted from her husband, sues for divorce, and returns to her parents' home, even if there are no serious happenings that last their life. If she does not return, the husband naturally accepts her divorce.

5) When a wife sues for divorce, articles essential to marriage belong to the husband, but when a husband sues for divorce, they belong to the wife. When divorced, there is no problem of property dividends, consolation money, and living cost for their children.

6) When a husband or a wife is divorced, their parents and the relatives do not take part in their divorce, it depends on only the husband and the wife.

7) Comparatively there is no child and absolutely no son between a husband and his wife, when the divorced is concluded. The mother usually brings up the children after divorce. There is n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even with children.

8) When a woman is remarried to a man, she becomes a legal wife of a new husband, but sometimes she becomes a concubine, and she becomes a legal wife after she drives out the earlier wife. Nobody sees the contrast between a legal wife and a concubine unlike the people in the main land.

9) Remarriage procedures like divorce procedures are very simple. If a divorced man or a woman has an affection to another, he or she begins to live together without any due formalities. There are even the third or fourth divorced persons. These complicated cases usually do not go through legal formalities.